

수원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0나7446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0나7446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가단539202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천 담당변호사 이은정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상 담당변호사 한경민

변론종결 2021. 10. 27.

판결선고 2021. 12. 15.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가단539202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C, D,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4. 9. 30. 접수 제1512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결론 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1의 라.항 제3~4행(제2쪽 18~19행)의 ‘C의 딸인 피고 명의로’를 ‘C의 딸인 피고 단독명의로’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1~12행의 ‘소유권이전등기를’을 ‘소유권이전등기는’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2의 나.항 제6행(제4쪽 제1행)의 ‘갑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4 내지 12, 19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J의 증언’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엄기창, 판사 이지형, 판사 최호열